

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2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	
기관 명칭					
소재지	사무실			전화번호	
	실험실			전화번호	
변경신고 사항	변경 전			변경 후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제출서류	1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검정기관지정서 원본		수수료 없음			
처리절차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접수, 검토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	→ 심 사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	→ 변경지정 여부판정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	→ 검정기관 지정서작성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	→ 지정서 재발급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	→ 고 시 처리기관 (지정검정기관의 장)